

05 자 퇴 와 검 정 고 시

돌아올 수 있나

재입학과 편입학의 실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가장 중요한 것	3
03 어느 학년으로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복학·재입학·편입학** — 셋이 어떻게 다른가
-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 가장 중요한 한 줄
- ◆ 어느 학년으로 돌아오나 · **학교 밖 학습경험을 평가받는 길**
- ◆ **나가실 때 물어보실 한 마디** — 「돌아오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01 · 먼저 사실부터

길은 있습니다

「한번 그만두면 끝인가요」가 이 결정에서 가장 무거운 물음입니다. 제도에는 돌아오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을 놓치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길	뜻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휴학했던 경우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셋의 차이가 큼니다. 복학은 학적이 남아 있던 경우이고, 재입학은 원래 학교로 같은 학년이나 아래 학년, 편입학은 위 학년이나 다른 학교입니다.

그러니 앞 편에서 말씀드린 「휴학」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휴학이었으면 복학이고, 자퇴였으면 재입학이나 편입학입니다.

출처: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별표 7]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실제 허가와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02 · 가장 중요한 것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학·편입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시행령 제50조·제89조)

이 한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오려면 그 학년의 수업일수가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돌아오나	어떻게 되나
학년 초·중반	그 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난 뒤	원칙적으로 그 학년도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 규정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되면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그 학년도 입학·편입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장이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고, 이때 그 학년도에는 수료·졸업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언제든 돌아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 때가 학년 후반이면 그 해는 지나갑니다.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

자퇴를 정하실 때 「돌아올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해 보고 아니면 돌아가자」는 계획은 돌아갈 시점을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몇월까지 해 보고, 아니면 몇월에 돌아간다」를 미리 적어 두시라는 뜻입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89조 및 기재요령 편입학 항목. 학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03 · 어느 학년으로

같은 학년인가 위 학년인가

	어디로	어느 학년으로
재입학	중단 이전의 학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
편입학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

편입학의 자격 조건이 이렇습니다 —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그러니 2학년에서 그만두었다면 2학년 과정을 수료했어야 3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그만두어 수료가 안 됐다면 그 학년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해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98조의4)

학교 밖에서 공부한 것을 평가받아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학교가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일이라 모든 학교에서 흔히 하는 일은 아닙니다.

가능한지부터 학교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제98조의4 및 기재요령 편입학 항목. 이수인정평가 운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돌아올 계획을 미리 세우는 법

돌아오는 길은 나가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퇴를 정하시기 전에 이 넷을 적어 두십시오.

	무엇을	왜
1	언제까지 해 볼 것인가	기한이 없으면 계획이 아닙니다
2	무엇이 안 되면 돌아올 것인가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3	어느 학교로 돌아올 것인가	재입학인지 편입학인지 갑니다
4	몇 월에 신청해야 하는가	수업일수 3분의 2 안입니다

4번을 학교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돌아오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한 마디면 됩니다.

그만두는 날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학교와 이야기가 되는 상태이고, 한참 지난 뒤에 연락하기는 서로 어색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복학·재입학·편입학 의 차이를 아는가
- ☐ 휴학이면 복학 이라는 것을 아는가
- ☐ 수업일수 3분의 2 제한을 아는가
- ☐ 돌아올 기한 을 정해 두었는가
- ☐ 돌아올 기준 을 정해 두었는가
- ☐ 학교에 절차를 물어봤는가
- ☐ 그 학년을 수료했는지 아는가
- ☐ 이수인정평가 가 가능한 학교인지 물어봤는가

여섯째를 그만두시는 날에 하십시오.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 한 마디가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돌아올 길은 있다. 다만 시점이 정해져 있다.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남아 있어야 하니, 돌아오려면 학년 초·중반에 정해야 한다.

저희가 상담에서 본 어려운 경우는 돌아가고 싶는데 시점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제도가 막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놓친 것이었습니다. 나가실 때 돌아올 문의 위치를 확인해 두십시오.

05 · 자주 묻는 것

돌아오는 것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자퇴했다가 돌아오면 학생부에 남나요?

학적 변동은 학적사항에 남습니다. 규정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학적사항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이 학적 변동만으로 판단한다는 근거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중단한 기간의 학생부는 비어 있게 됩니다. 남는 문제는 「기록이 있다」 보다 「기록이 없다」 쪽입니다.

학종을 쓸 계획이라면 이게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Q. 검정고시를 봤는데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가 편입학할 수 있으니, 검정고시 합격으로 학력이 인정되면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원, 시점, 학년 배정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시점 제한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묻는 곳은 가려는 학교의 교무실이고, 학교에서 어려우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검정고시를 봤으니 이제 못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있고 시점이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돌아오는 길은 복학·재입학·편입학 셋이고,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기재요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과 절차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따릅니다. 학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